



NEVADA SECRETARY OF STATE

유권자 권리장전 (Voters Bill of Rights)

네바다 수정법(NRS) 293.2546 과 네바다 주 헌법 2 조 1A 항에 명시된 네바다 주 유권자 권리장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권리. 네바다 주 헌법상 유자격 선거인으로 동헌법 2 조 6 항에 따라 유권자등록을 마친 모든 유권자는 유효한 의회법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다음에 설명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할 권한:
 - (a) 명백히 입후보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쇄된 투표용지; 그리고
 - (b) 유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표방식이 있는 투표용지
 2. 투표절차 설명문에 대한 질문과 투표소 내 보이는 곳에 게시된 투표절차에 대해 질문할 권한.
 3. 협박, 위협 또는 강압적 상황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
 4. 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조기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간이 되었으나 아직 투표소 내에서 대기줄에 서서 투표하지 못한 경우 당해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
 5. 훼손된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 투표용지를 수령할 권한.
 6. 필요할 경우 투표행위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
 7. 법이 정한 대로 정확하고 유용하며 적시에 배달되는 견본 투표용지를 받을 권한.
 8. 조기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쓰이는 투표장비에 대해 사용설명을 들을 권한.
 9. 선거제도 접근에 인종, 연령, 신체장애, 군경력, 직장 또는 해외거주 등을 포함한 모든 불평등이나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
 10. 법이 정한 대로 정확하게 모든 투표가 획일적으로 주전체에서 검표 및 재검표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권한.
 11. 법이 정한 대로 선거 불만이나 선거 논쟁이 정당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